용 역 입 찰 유 의 서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목 차

제 1 조 (목적)----------1
제 2 조 (용어의 정의)----------1
제 3 조 (입찰참가 신청)----------1
제 4 조 (입찰에관한 서류)----------1
제 5 조 (관계규정등의 숙지)----------1
제 6 조 (입찰보증금)----------2
제 7 조 (입찰참가)----------2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2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3
제 10 조 (장기계속 용역의 입찰)----------3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3
제 12 조 (입찰의 무효)----------3
제 13 조 (입찰의 연기)----------4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4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4
제 16 조 (계약의 체결)----------4
제 17 조 (계약의 성립)----------5
제 18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5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5
제 20 조 (비밀유지의 의무)----------5
제 21 조 (기타사항)----------5

용역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각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참가신청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4. 입찰서(소정서식) 또는 우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찰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과업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 5 조(관계규정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우리원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신설 2012.3.13)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⑥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전자입찰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한 것으로 갈음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제 7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신설 2012.3.13)

④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입찰서의 봉인등을 생략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연구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연구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장기계속 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

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입찰의 연기) 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연구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5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과업지시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0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199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유의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유의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